201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수시모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수시 · 2014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입학안내 : http://admission.acts.ac.kr

모집인원 및 자격		4
지원자격별 안내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 영주교포의 자녀	5~7
	· 해외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자영업자의 자녀	
	· 선교사의 자녀	
	· 외국국적취득 외국인(학생 본인)	
2. 입학정원 비제한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8~9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전형방법 및 일정		10
전형료		
원서접수방법		
유의사항		11
제출서류		12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1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체계도

ACTS Educational System

설립목적 The Goal of ACTS	**아세아복음화** Evangelization of Asia

교육이념 The Educational Ideal	**신본주의 · 복음주의** Theocentricism · Evangelicalism

교육목적 The Educational Goal	**'신학연구 및 교육'과 '현장지향적 학습'을 통한**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 Mission Oriented Global Leadership



교육목표 The Educational Objectives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복음사역자 양성** To Equip Gospel Workers with Faith & Knowledge	**국제적 소양을 지닌 선교전문가 자질 함양** To provide Mission Expertise with International Insight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지도자 양성** To Raise Christian Leaders to Guide this Age

학 과 별 교 육 목 표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Departments

신학과 (Department of Theology)

신학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치고 신본주의적인 신학을 연구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여 이 복음을 한국,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전역으로 전하는 사명감을 가진 복음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본교는 교회연합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대학교로, 본교의 신학과를 졸업하면 신학사(B.Th.)학위를 받고 본교 대학원 또는 각자 자신의 소속교단의 대학원(2년제 또는 3년제)의 교역자 양성과정(M.Div.)을 거쳐 성숙하고 실력있는 목회자 또는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선교학과 (Department of Missiology)

선교학과는 학생들이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신본주의적인 원칙에 의해 살아가도록 하며 이 복음을 아시아 및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선교전문인을 양성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연구하며, 미래의 선교정책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영적・신앙적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시아 및 세계의 복음사역자로 양성합니다.

기독교교육학과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 활동을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전문가를 길러내며, 신본주의, 복음주의라는 ACTS 교육이념 위에서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교육의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자 합니다.

기독교육학과에서는 교육, 상담, 복지등의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으며, 졸업하면 문학사(B.A.) 학위를 받고 본교 대학원 또는 자신의 소속 교단 대학원(2년제 또는 3년 제)의 교역자 양성과정(M.Div.)을 거쳐 성숙하고 실력있는 교역자 또는 선교사로 사역하거나 사회교육원등을 통해 사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선교영어학과 (Department of Mission English)

선교영어학과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춘 선교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특히 세계어인 영어를 집중적으로 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제자훈련과 영어예배 및 다양한 경건훈련을 하며 해외선교 실습을 하고 캠퍼스의 외국인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교제를 합니다.

졸업 후 신대원(M.Div.) 및 선교대학원(TESOL 전공) 진학, 해외선교사, 영어교육 전문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선교중국어학과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선교중국어학과는 학생들이 중국어를 통・번역 할 수 있도록 중국어 능력을 제고시키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 및 중국의 현대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국전문가로 21세기 선교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고 비전을 확인하도록 돕고, 중국어를 활용하며, 졸업 후 본교 대학원 또는 국내・외(중국 포함)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중국 분야에서 기독교 전문인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01. 모집인원 및 자격

1. 모집인원

구분	모집구분	모집학과	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신 학 과	**4**	*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모집단위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선 교 학 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	. 순수외국인 . 12년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신 학 과	**모집인원 제한없음**	
		선 교 학 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 모집인원 미충원 시에는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2. 지원자격

- 모든 지원분야는 공통적으로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1.5년	-	2년	1.5년	2년	1.5년	연속
		3년	3년	2년	-	3년	2년	3년	2년	비연속
해외근무자(공무원,상사직원,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연속
		3년	3년	1.5년	3년	3년	2년	-	-	비연속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연속
		3년	3년	1.5년	3년	3년	2년	-	-	비연속
자영업자의 자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자영업(현지법인 근무 포함)을 하는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연속
		3년	3년	1.5년	3년	3년	2년	-	-	비연속
선교사의 자녀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선교사, 선교목적 체류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연속
		3년	3년	1.5년	3년	3년	2년	-	-	비연속

⑴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⑵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⑶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⑷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1-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4학기) 이상 이수하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2년	2년	1.5년	-	-	-	-	-	-	*TOPIK :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⑴ **재학기간의 기준**

㈎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⑵ **보호자 등의 조건**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2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12년	11년	-	-	-	-	-	-	*TOPIK :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12년	12년	12년	-	-	-	-	-	-	

(1) **전교육과정**

(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나)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2) **보호자 등의 조건**

(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TOPIK :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1)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국적자 제외)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⑵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3.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⑴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3 지원자격 세부 안내

1. 외국학교 인정기준
   ⑴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재학연한 인정 기준
   ⑴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⑵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
   ⑶ 국내 . 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해당학교과정 이수자로 미인정
3.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기준
   ⑴ 고등학교 2년(4학기)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기간
   ⑵ 중학교와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에 걸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기간
   ⑶ 위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4. 입학허용기간 : 제한없음
5. 복수국적 허용 여부 : 복수국적 불허용

02. 전형방법

모집학과	전형 방법	비고
전체학과	**기본 서류 심사 + 구술 면접 100%**	

1. 성적반영항목의 성적 중 전체 또는 일부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모집정원 내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술면접에 불응시하거나 불합격 처리 시,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0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2013년 08월 01일(월) ~ 09월 13일(금)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류접수	2013년 09월 04일(수) ~ 09월 13일(금) (토・주일・공휴일 제외)	본교 교무지원팀
원서접수	2013년 09월 04일(수) ~ 09월 13일(금) (토・주일・공휴일 제외)	본교 교무지원팀
첨부서류 제출	- 담임목사추천서 및 기타서류(모집요강 참조) - 제출기간 : • 2013년 09월 04일(수) ~ 09월 27일(금) (토・주일・공휴일 제외)	본교 교무지원팀
전형일자 (면접고사)	2013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 8:50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	본교 지정장소
합격자 발표	2013년 11월 06일(수) 오전 11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록일자	예치금 : 2013년 12월 09일(월)~12월 11일(수)(3일)	본교 지정등록장소
	잔여금 : 2014년 02월 06일(목)~02월 10일(월)(5일)	

04. 전형료

모집학과	전형료	비고
전체학과	**80,000원**	

※ 우편접수시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05. 원서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서류접수 : **<Ⅷ. 제출서류 목록>**의 해당사항 참고

※ 외국공문서(증명서)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2. 원서접수 : 입학원서, 담임(지도)목사추천서, 학력조회자료, 기타 제출서류

접수처	**양평 캠퍼스**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 151-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본관 1층 행정사무실 교무지원팀 전화 : (031) 770-7720~7723 팩스 : (031) 772-5479

3. 우편접수는 제출서류 일체(수험표 및 부본 포함)를 우편발송 후 원서접수 기간 중 입시사무실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우편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수험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편발송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수험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6. 서류제출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또한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됩니다.(모집정원의 2%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과 초중등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만 제외.)
2. 우편에 의한 접수를 포함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본 대학에 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지원자는 서류접수 여부를 본 대학 교무처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지원자는 지원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4.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사본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입학대책위원회(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07. 지원자 필수 확인사항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 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단, 외국인 전형은 수시 6회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08.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합격자라도 이미 제출한 서류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서류의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 경우 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면접고사일에는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면접고사일에는 휴대폰, 호출기,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5.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09. 어학능력

1.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본인만),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순수 외국인은**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미취득시 졸업자격 미달 처리함)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10. 제출서류 목록 <●표시된 서류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자격	①외국 영주교포 자녀	②해외근 무공무원 자녀	③해외근 무상사직 원자녀	④외국정 부국제기 구근무자 자녀	⑤유치과 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자영업 자자녀	⑦선교사, 선교목적 체류자의 자녀	⑧외국국 적 취득 외국인 (본인만)	⑨전교육 과정이수 자	⑩순수 외국인	⑪북한 이탈주민
입학원서 (본교양식)	●	●	●	●	●	●	●	●	●	●	●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 (본교양식)	●	●	●	●	●	●	●	●	●	●	●
신앙보증서 1부 (본교양식, 신앙보증인 2명)								●	● (외국인만)	●	
학력조회자료 (본교양식)	●	●	●	●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해외수학과정포함)	●	●	●	●	●	●	●	●	●	●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호(제)적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또는 호(제)적등본)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각 1부)	●	●	●	●	●	●	●	●	● (학생만)	●	
영주권사본 (부/모/학생 각 1부)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부/모/학생 각 1부)	●	●	●	●	●	●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외국근무 경력기간 명시)		●	●	●	●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	●	●	●	●	●				
해외지사설치인증서			●								
자영업허가서						●					
세금납부사실증명관련서류 (학생재학기간 중 최소 2년치)						●					
선교단체장 발행의 선교파송증명서 (파송기간 명시)							●				
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	● (외국인만)	●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증 (학생 필수, 부모는 해당자만)								●	● (외국인만)	●	
전가족 호적등본 (해당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									● (외국인만)	●	
※재정능력입증서류									● (외국인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증명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 재정 보증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미화 $13,000 이상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13,000 이상 국내송금(환전)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 재산세 과세 증명서
④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 호적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증명서

(중국인의 경우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구부, 거민신분증)

11. 입학원서 작성방법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제외)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2. 입학원서, 입학원서 부본, 수험표 및 접수증의 기재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표시가 된 란은 본교에서 기재하는 란이므로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원구분은 신입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지원자격은 "①외국영주교포자녀, ②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선교사 자녀 ..."등 중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 성명(한글, 한자, 영어), 국적,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연락처는 입시기간 중 수험생에게 긴급히 연락이 가능한 수험생 본인이나 보호자의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초・중・고・대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국내해당 과정과 정규여부(학력인정교)는 출신학교에 확인 후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 가족사항 란의 보호자는 영주(근무)기간 내에서 영주(근무)국에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영주(근무)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합니다. 제3국 수학 시에는 해당 수학 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같은 란에 별도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아. 출입국 사실란은 출입국가, 시기, 기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요건에 맞는 기간만 기재 합니다.

자.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5. 학력조회자료 서식을 원어 및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등록포기

⑴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일(정시모집 시작 2일전)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⑵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합격 취소(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등록금 반환 신청서)는 해당 전형시기에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환불

⑴ 등록금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교 교무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령 83호)

환불금액	환불접수기간	환불방법	구비서류
납입금(입학금 포함)전액	학기개시일 이전	등록포기각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회계팀에 제출하면 통장으로 입금	①등록포기각서 (본교소정양식) ②등록금반환신청서(본교소정양식) ③본인 신분증/도장 ④타대학합격증명서 또는 타대학등록금 고지서 사본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자퇴원을 교무처에 제출한 후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회계팀에 제출하면 통장으로 입금	①자퇴원 (본교소정양식) ②등록금반환신청서(본교소정양식) ③본인 신분증 ④보호자 및 학생 도장 ⑤보호자 통장사본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반환하지 아니 함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13.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이 수험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입학 전형 정보 수집 및 이용</th></tr>
<tr><td>보유근거</td><td>매학년도 신(편)입생 대학입학전형 주요계획 및 자체 입학 전형 계획</td></tr>
<tr><td>보유목적</td><td>대입 입학 전형</td></tr>
<tr><td>필수항목</td><td>지원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인/재외국민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자기소개서, 출석교회 등</td></tr>
<tr><td>보유 및 이용 기간</td><td>⑴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⑵ 합격자의 경우, 학적자료로의 이관에 따라 일부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td></tr>
<tr><td>자료제공</td><td>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등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공의 목적(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취급위탁</td><td>대입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tr><th>수탁업체</th><th>위탁업무 내용</th><th>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th><th>기타</th></tr>
<tr><td>한국교육학술정보원</td><td>학생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td><td>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td></td></tr>
<tr><td>한국교육과정평가원</td><td>수능성적 온라인 추출</td><td>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td>수능최저학력기준 추가 시 적용</td></tr>
<tr><td>한국대학교육협의회</td><td>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td><td>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td>고등교육법 시행령</td></tr>
<tr><td>한국대학교육협의회</td><td>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td><td>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td>주민등록번호/모집단위명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td></tr>
</table>
* 주의 : 학생생활기록부와 수능성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td></tr>
<tr><td>제3자 제공</td><td>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h>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th><th>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th><th>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th><th>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th><th>기타</th></tr>
<tr><td>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td><td>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td><td>등록대학, 모집단위명</td><td>처리목적 달성시까지</td><td></td></tr>
</table></td></tr>
<tr><td>고유식별 정보수집</td><td>대입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td></tr>
</table>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